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신정호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2100호

다. 발의일자 : 2021. 01.04

라. 회부일자 : 2021. 01.21

2. 제 안 사 유

- 현행 급수공사비의 계산방법은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급수공사비는 급수관의 인입구경 크기와 공사 연장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과는 직접적 관계가 적음.
- 이에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인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문구를 삭제하고, 정액공사비 예외 대상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3. 주 요 내 용

- 가. 제한규정인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문구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
- 나. 정액공사비 예외대상에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신설함(안 제7조제2항제3호)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정액공사비에 물가상승률과 현장여건 등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1)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
 - 현행 조례¹⁾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별도로 고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유형·규모로 산출된 급수공사비를 수요자에게 선납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음.
 - 정액공사비 도입²⁾은 급수공사 건별로 매년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 특성이나 지역적 차이에 따른 공사비 부담에 있어 형평성 도모가 가능하고 급수공사비 실비 산정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 발생 및 이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 저하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 다만, 실제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자재비, 시공비 등)와 감리비, 복구비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이 ‘건축연면적과 세대수³⁾’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액공사비 징수액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음.

1)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2) 1981년 정액공사비 제도 최초도입 후 그동안 부과기준 2회(2006년, 2017년) 변경

3) 건축연면적은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 세대수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붙임 1. 지침 참조)

<정액공사비 징수액과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예상)
징 수 액	27,312	27,516	27,303	23,892	25,205
집 행 액	20,794	27,979	26,455	26,477	27,041
차 액	6,518	-463	848	-2,585	-1,836

- 즉, 정액공사비는 앞서 언급한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나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실제 공사비와의 편차 발생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용 부담의 일반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급수공사비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판결문 일부)⁴⁾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급수공사비’라 한다) 부담에 관하여 정액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액제를 도입하면 주민들은 그러한 편차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서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정한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 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러한 고시는 조례의 위임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 따라서 안 제7조제1항과 같이 정액공사비 산출에 있어 물가상승률 또는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실제 공사비와의 편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정액공사비 부과기준 개정시 개별 산출요소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2) 정액공사비 예외대상에 추가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호)

-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공사와 같이 현장 여건상 급수공사 규모의 변동 폭이 커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정액공사비가 아닌 실제 드는 비용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 없이 실제 드는 비용으로 공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바, 안 제7조제2항제3호와 같이 그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액공사비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제 7 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 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의 공사비
2. 전용 급수설비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3. 공사현장 등 임시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신설)

붙임 1.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2017.6)

제 4 장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출 및 정산

1. 정액공사비의 부과기준

가.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일반건물

가) 건축연면적 85㎡미만(건당) ⇒ 600,000원

나) 건축연면적 : 85㎡~150㎡미만 ⇒ 600,000원 + 85㎡초과면적×(㎡당 8,000원)

다) 건축연면적 : 150㎡~500㎡미만(건당) ⇒ 1,120,000원 + 150㎡초과면적×(㎡당 3,000원)

라) 건축연면적 : 500㎡~2,000㎡미만(건당) ⇒ 2,170,000원 + 500㎡초과면적×(㎡당 1,000원)

마) 건축연면적 : 2,000㎡~7,000㎡미만(건당) ⇒ 3,670,000원 + 2,000㎡초과면적×(㎡당 800원)

바) 건축연면적 : 7,000㎡이상 ⇒ 7,670,000원 + 7,000㎡초과면적×(㎡당 350원)

사) 단독 및 다중주택의 신규 급수공사 시 수요자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기존 건물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는 실제소요공사비를 부과한다.

아) 용도가 다른 단독주택, 일반건물 등에 2개 이상의 독립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용도별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비 산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가) 2세대~5세대 ⇒ 500,000원 + 세대당 300,000원

나) 6세대~10세대 ⇒ 750,000원 + 세대당 250,000원

다) 11세대~20세대 ⇒ 2,050,000원 + 세대당 120,000원

라) 21세대~49세대 ⇒ 850,000원 + 세대당 180,000원

마) 50세대~164세대 ⇒ 6,975,000원 + 세대당 55,000원

바) 165세대 이상 ⇒ 11,403,000원 + 세대당 28,000원

사)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단일 수도계량기(주 수도계량기)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액공사비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를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액공사비에서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나. 건축유형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신축(멸실 후 새로 짓는 건물 포함)인 경우에는 신축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며, 기존건물의 멸실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단, 급수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공사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을 기준으로 정액공사를 부과한다.

3) 기존 건축물의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신축당시에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정액공사비를 적용하여 부과 한다.

나) 정액공사비 제도 시행(1981.8.10.) 이전 건물과 신축당시에 급수공사를 시행한 건물에 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여 시행한다.

4) 일반 건물(근생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시 점포 또는 호별 계량기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급수공사비는 전체 연면적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세대(점포)별 계량기 설치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공사비를 추가로 부과한다.